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25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18. 10. 25 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18. 10. 15.
- 회부일 : 2018. 10. 19. (의안번호 :18 - 88)

2. 개정이유

법제처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른 정비권고
 - 소집불응시 불이익 조항 삭제 등(안 제8조)
 -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금지행위 삭제(안 제10조)
 - 의무교육시간 규정 삭제(안 제12조)
-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4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마포구 지역내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른 정비권고에 따라 안 제 8조, 안 제10조, 안 제12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